

2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성팀 세미나 시각장애여성이 겪는 차별경험

1. 가족내 차별
2. 노동에서의 차별
3. 교육에서의 차별
4. 접근권 차별
5. 문화권 차별
6. 모성권 및 보육관련
7. 건강권
8. 성의식, 성폭력
9. 정신지체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10. 자립생활, 시설폭력

1. 가족내 차별

- 1) 가족 내에서 집안의 중요한 가정행사등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다
- 2) 가정 내에서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에게 가사(노인 부양 및 친척아이 돌보기등)가 과중될 경우 차별이다.
 - 성장과정에서 무성적이거나 나약한게 취급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여성장애인 개인의 여건 이상으로 여성적 역할 부담.
 -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무직)이 있음에도 가사가 장애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경우
 - 부모 부양이나 조카가 맡겨지는 경우
 - 과다한 정도의 기준은? 의사의 진단서 첨부등의 방법등
- 3) 자기의 능력이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사에서 역할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다.
 - “너는 보고만 있어”.

- 가족으로부터 자신도 가족의 한 일원임을 부정당함(니가 내 식구여서 창피하다 등)
- 자신의 집안에서의 위치를 무시(니가 누나야? 등)
- 여성으로서 무시당하거나 반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하지 않거나 집안일만 시키는 등의 경험
- 각종 언어, 물리적 폭력 등

1163-8342

2. 노동에서의 차별

(승진, 배치, 임금 등 관련)

1) 여성장애인을 이유로 주업무보다는 보조적 업무를 기준으로 능력을 판단하여 업무능력 개발의 기회제공없이 고용, 승진, 배치에 있어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 무작위 압력을 가하여, 심리적 위축을 가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
- 장애여성=비장애여성의 역할인 커피심부름, 청소, 전화받기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 기회(재교육, 출장등)의 제한, 배제 : 얼마나 다닐지... 회사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없음.
- 결과적으로 능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책임.

2) 객관적 능력 판단과 평등한 승진기회 제공 없이 획일적 단순업무에 배치하여 장애유형 및 성의 고려없이 역할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다.

- 능력에 합당한지의 여부가 아닌 부리기 쉬운 사람 채용
- 사무직대졸채용거부. 청각장애인 단순직에 많음. 시각장애인 안마, 침술(대학 졸업후에도)
- 장애여성의 경우 취업도 어려운데 승진 필요없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 고유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이동시킴(설명 없이)

3) 장애를 이유로 같은 업무 팀원들과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다.

- 17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가 4층으로 이동하면서 여성장애인을 힘들거라는 이유로 1층에 혼자 남겨놓음

4) 장애를 이유로 동일 업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여러경로 통해 드러나고 있으나, 임금차별도 당연히 인정하는 실태. 해고에 대한 두려움.
- 동일 업무이지 동일 노동이 아님. 신체상 환경상의 조건으로 보다 잦은 휴식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무 성격에 따른 판단이 요구됨

5) 휴식 및 출,퇴근 시간등 업무시간조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 장애정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라는 단서조항 넣으면 안된다

6)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 임산부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에 대한 유예조치가 있다.

7) 장애의 신체조건과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와 임금책정을 차별이다.

8) 공공기관과 사용자가 고용에 있어서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9)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서 모집, 채용, 교육, 승진, 전보, 배치, 임금,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리적환경 관련)

10)물리적 노동환경의 미비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취업장애인 구인 문구 :편의시설미비로 휠체어 장애인 배제되고 목발사용 장애인 용인

11)고용과정에서의 물리적 노동환경 미비를 문제삼지 남겠다는 서면 각서 나 구두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차별이다.

1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출.퇴근에 있어 요구되는 추가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활동보조인이나 경비 보전 중요

(직장내 교육관련)

13)공공기관과 사업주가 양성평등 및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고려사항 매 분기 2회)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가 적절하다. 교육 미이행시 책임소재 분명.

(서비스 차원)

14)성별을 이유로 직업훈련과정에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남자는 미디어.첨단사업 관련 훈련에 배치되고 여성이 원해도 패션 쪽으로 강요

-고용장려금 외에 장애여성의 고용관련 부분 없음

-유형에 따라 추가장치. 비용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함.

(출산휴직)

15)산전, 산후 휴가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휴가기간 산정은 차별이다.

-고려사항 적절한 휴가기간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16)국가와 사업주가 여성장애인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다.

(육아휴직)

17)국가와 사업주가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장애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영유아의 양육 및 보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18)육아휴직을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탁아시설 및 서비스)

19)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0)국가는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1)사내 탁아서비스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조도구 및 장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912v-645*

- 장애특성에 따른 서비스 요구

(예 : 청각 - 자녀 및 교사와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경광등이나
통역 배치 등.

시각 - 자녀의 상태를 원하는 때에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함

지체 - 부모의 불편한 거동을 보조할 수 있는 설비 등

수유 시에 장애특성상 침대 혹은 별도의 요구되는 도구

및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22)여성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수유시간 산정은 차별이다. *~ 912v-645*

(성희롱 관련)

23)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차별이다.

(비정규직 관련)

24) 장애를 이유로 비정규직만을 제안,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다.

위 차별 규정을 바탕으로 취업 시와 노동현장에서의 성과 장애에 대한 차별 경험 드러내기

- 임금
- 승진, 배치
- 물리적 환경(의사소통 지원 등)
- 동료 및 상사의 태도
-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의 노동관계법 이용시 문제점
- 기타

여성장애인의 인권
2024. 7. 13

912v-645
912v-645
912v-645

3. 교육에서의 차별

입학 전 및 진학 시 차별

(자기인식과 타인의 자신 인식, 성과 장애 인지사유 모두 파악이 필요함)

- 부모의 인식 및 태도(무관심, 배워서 뭐하냐, 살림이나 잘해라 등)
- 입학 거부 사유(기타 다른 이유)
- 주변 환경 요인의 작용(이웃, 친지, 학교 환경 등에 영향 받은 사유)
- 집안 환경 및 경제력과 진학 관계성(가난 때문에 그러나 다른 형제는 학교를 다님)
- 진학시키지 않은 사유
- 부모 및 형제 자매의 태도
- 다른 형제와의 차별과 본인 및 가족의 이해 방식
- 주변 환경 요인
- 진학결정 및 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혹은 사람, 계기) 등

특수학교에서의 차별

- 장애유형과 정도,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업함으로서 오히려 학력저하를 유발하는 방식
- 일반학교에서 하는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진로교육하지 않는 문제
-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학력저하와 미래계획과의 연관성과 인식
- 학교 운영 및 특수교사의 태도 등

학교 내의 환경 차별

- 장애특성에 따른 도구의 부재로 인한 차별
(예 : 뇌병변 장애인의 책상, 저시력장애인에 대한 설명 및 기자재 미흡, 화장실 경사로(지체), 수화통역(청각), 점자 및 큰 글씨 교재(시각) 등.)
- 편의시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개인적 장애에 따라 검토 요구
- 양호실 등의 접근편이성 및 몸의 요구에 따른 이용도, 양호교사의 이해도 및 사유 등

학교 내의 인식 차별

- (예 : 성, 장애에 대한 무시(직접차별), 고려없음(합리적 보장의 부재), 해당없음(간접적 차별), 생각해보지 않았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음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 분리, 배제, 제한 등의 행위)
- 학우 간 차별
- 교사의 차별
- 행정 차별

통합교육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기타

4. 접근권 차별

- 1) 모든 공공시설에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환경을 갖추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대형몰, 여성전용시설, 레저이용시설, 미용시설 등에서의 탈의실 공간이 열악한 경우 등)
- 2) 장애인 화장실에 모든 장애특성을 고려한 부대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차별이다.
 - 생리대 및 휴지 자판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높이 및 기기 재조정, 휠체어 높이에 맞춘 유아 기저귀 보조대, 간이 침대(척추장애인은 경우에 따라서 누운 자세 혹은 옮겨 앉은 상태에서 처리가 요구됨)
- 3)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는 것은 차별이다.
 - 화장실 도우미,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 등
- 4) 입주건물의 분양, 임대 시에 장애 특성과 유형에 맞도록 개보수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다.
 - 계약시 원상복귀 약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경우
 - 고려사항 : 비용의 문제와 사인관계에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5)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임대기구가 없을 경우, 임대보조기구를 개인의 장애특성에 맞도록 개조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다.
 - 한시적 사용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청각, 시각 장애인에게는 어떤 보조도구가 필요한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비용 때문에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 6) 정보접근권 제공에 있어 성별과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서비스는 차별이다.
 -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가?
- 7) 성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청각장애인, 시각 장애인 남녀간의 정보격차가 있는가?

- 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여성으로서 어려움
- 정보접근권 제공에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
- 청각장애인, 시각 장애인 남녀간의 정보격차가 있는가
- 기타

5. 문화권 차별

-“장애여성의 눈으로 문화 뒤집기”

1. 문화 속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은 “약하고, 예쁘고, 역경을 딛고,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어눌하고, 중성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

2.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의 왜곡된 이미지는 왜 문제가 되는가?

-장애여성이 상품화되며, 정체성과 상관없이 이미지화·재교육화·대중화됨으로써 문제됨.

“의식적인 설득보다는 무의식적인 각인이 더 무섭다”

3. 이제 장애여성의 목소리와 몸으로 문화생산자가 되자. “누군가에 의해 찍히지 말고, 생산의 주체자가 되자”

4. 장애여성, 우리만의 문화를 찾자. “느림의 문화”, “체험의 문화(일상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한+명량함 공존(약하면서 강하고, 슬프면서 강하고...)”

함께 생각해 보기

◎ “여성계에서는 이미 매스미디어에 의한 차별조항을 만들고 있다”

☞ 교도소 수감자나 장애인 등을 비하하면 안된다는 방송윤리위원회 강령이 있을 것이다?

◎ “장애여성에 의한 차별감수성척도도 만들어 내야 한다”

☞ 근거없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을 차별이다.

(교과서나 매체에 건강한 이미지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는 방송에서 반드시, 장애여성의 탁월함이 나타나도록 강제하고 있다.⇒“우리도 강제법을 만들자”

☞ 국제조약안에, 모든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필요와 사회적 잠재력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장애여성의 탁월함이 드러나도록 국가에서 조치해야 한다.

◎ “문화에 대한 접근권,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해야한다”

(예: 영화관에 도우미 배치,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할인...등)

- 청각, 시각 여성장애인들은 매스미디어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 어떤 문화생산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전문가로 대우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 문화를 즐기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6. 모성권 및 육아권 차별

(임신 출산 관련)

1)근거없는 유전가능성이나 장애를 이유로 임신, 출산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임신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주위의 반응과 관련하여

2)제공되는 임신,출산,육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식 부족과 관련해서

3)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임신,출산,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4)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사회보장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5) 장애인의 육아와 관련해서 사회보장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6) 장애인의 보육정책 및 서비스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별이다.

7)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관련법에 입양자격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하게 장애가 없을 것"규정은 차별이다. 실제 국외입양 양부모의 기준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8) 장애아동 입양시 육아 및 양육관련 추가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외국사례에서 보면 부모가 모두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도우미등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

9) 장애여아가 입양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시각장애로 인해 임신, 출산 시 어려웠던 것은?

- 시각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가족 등 주변의 태도에 대해 불쾌했던 것은?

- 산후 조리시 어려웠던 점과 제공되었으면 하는 제도는?

- 자녀 양육 시에 가슴 아프거나 불쾌했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주변의 인식, 학부모로서의 문제, 보육시설에서의 문제, 자녀의 친구관계에서의 문제, 위험했던 상황 등)

-기타

7. 건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등)

1) 장애여성의 질병에 대해 장애와 성을 이유로 무시와 방치하는 것은 차별이다.

2)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526-3) 임신출산 후유증과 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4) 몸의 조건에 맞는 운동방식의 미개발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해 장애여성에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5)개인적 자존감 부정과 사회적 소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장애여성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6)장애여성의 생리 불순을 비롯한 각종 부인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7)체육교육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장애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8)국가와 지방자치체가 장애인의 몸의 조건을 고려해 사회체육정책, 제도, 서비스를 적극 개발 및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9)지역의 복지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이 장애와 성을 이유로 장애여성의 질병에 대한 국가, 지자체, 병원, 가족의 의무에 대한 감시를 방임하거나 의무 위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10)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수준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한 관리수준에 동일하게 정책 및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높은 만성질환율, 낮은 건강검진수진율과 관련해서

- 비용과 접근권의 문제등이 수진율이 낮은 주요 이유였다.

- 서비스나 정책 등을 포괄

- 건강관리수준에 건강검진수진율, 예방접종율, 시스템, 지원등

11)국가 및 지자체는 성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조기구 제작 및 개발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성별뿐 아니라 신체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2)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 및 사회보장 집행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건강권포함한 모든 부분이다. 최저생계비 산정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다.

(의료기관 관련)

13)의료기관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비롯해 장애여성에게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 장애여성을 위한 보조의료기구가 없다거나,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료 거부하는 경우

-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

- 비인도적이다.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나 가족에게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진료해야 한다.

14)의학 교과과정에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15)의료기관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차별이다.

1145-2324

- 합리적 이유 없이 자연분만을 거부, 무조건 제왕절개 실시
- 장애여성 7개월만에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하여 인큐베이터 사용. 좀더 후에 출산했어도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듦 : 충분한 설명 미비
- 16)병원내에 장애여성전담부서 (의료 및 서비스)를 만들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장애여성관련 의료서비스 정보의 시스템화 필요
 - 전문병원이나 지정병원은 인센티브없이 현실적 어려움.
- 17)장애특성에 맞추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다.
 - 청각장애여성(수화통역),시각장애여성(상황설명), 척추만곡증(엑스레이이용불편)
- 18)의학 연구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 병원 이용 시의 불편한 경험이나 어려움
 - 장애 보조기구 구입 및 사용할 때의 어려움
 - 건강 관련한 경제적 문제
 - 기타

8. 성폭력과 성의식 차별

1)장애를 이유로 성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뇌성마비치고는 여자답다’

-무성적 존재로 인식

-내가 여자로 느껴지나?하는 양가감정을 느끼게 됨

-성적 대상화로 전락 - 성추행·성폭력의 대상

-“몸이 불편해서 애는 낳겠느냐”, “어느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냐”

(부모가 아닌 사람이) “성관계도 못 가질텐데 왜 사귀냐?”, 임신해서 병원갔는데 “낳을 거예요, 말거예요?”

-생리불순의 여성장애인에게 의사가 “굳이 생리를 할 필요가 있냐?, 뭇하러 생리하려고 하나?”

2)장애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차별이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 또는 가족에게 돌려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엄마가 죄가 많아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부부 관계가 지저분해서”

3)학교나 시설 등에서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에게) 성인식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4)모든 성교육에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차별이다.

5)장애유형에 맞는 성교육 교재 · 교구 · 교수방법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 수화교육이나 점자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6)장애인은 성, 혼인,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지지 · 옹호 ·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7)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불임시술 및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다.”

8)장애유형에 맞는 피임, 성 향유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피임 및 장애에 맞는 성 향유 도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규로 같것과 정책유도로 규정해야 할 것은 구별이 필요하나, 법규로 명시해서 관련자들이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성에 대한 지지 문화를 만들고 성 향유권을 확인시키는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성기삽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정서적 성생활, 다양한 성생활 가능

-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 적극적 성생활 영위

(학대)

9)장애를 이유로 언어 · 신체 · 정신 · 정서 · 물리적 학대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시각장애 여성 등에게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 형태(성희롱 포함)
- 청각, 시각장애 여성 등에 대한 사람들의 성의식은 어떠하다고 생각되는가(매스미디어 등에서의 부정적 이미지 등)
- 시각장애 여성은 자유로운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있는가(장애로 인한 피임 제한, 자위 도구의 제한, 임신 및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 존중 등)
-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을 부정당해본 경험이 있는가? (듣지도 못하면서 무슨 여자구실을 하겠다고 등, 한편 괜히 걱정끼치지말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나다니지 마라 등)
- 기타

9.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1)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불임시술 및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다.”

-원칙적으로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정신지체인이 자기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다. 예) 정신지체 자조모임 피플 퍼스트

2)정신지체장애인에게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상이 공개되거나 초상권이 침

해되는 것은 차별이다.

- 정신지체인의 경우, 실명게재와 사진공개의 문제

- 경찰 수사과정 중에 경찰·검찰 출입 기자에게 알려져 공개되어 지는 경우가 있다.

3)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하게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4) 공무 등 자기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5) 정신지체인을 데리고 가거나 사취, 유린하는 것은 차별이다.

- 정신지체인을 임의로 데려가서 앵벌이, 불법 장기판매에 이용..

6) 시설에서 정신지체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차별이다.

7) 국가 및 지자체가 정신지체인을 방치하는 것은 차별이다.”

- 정신지체인에 있어 가족과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 가족 및 지역사회가 정신지체인을 방치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제도나 정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한다.

10. 자립생활

1)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립생활에 대한 고민 필요

- 미국이나 일본은 오랜 시간을 통해 장차법이 만들어졌으나, 우리 나라는 단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에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필요.

2) '차별'에 대한 규정 필요

(1) '자기 결정권'과 '지역사회'라는 2가지 조항(혹은 '시설'까지 더하여 3가지 조항으로)으로 설정

-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 '자기 결정권'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인 내용이 장차법에 제시되어야 함

- '자기결정권의 보장'에서 '법률상의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의 뜻은 후견인 제도(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를 뜻하는 것임

(2) '활동 보조 서비스'에서 '유료'에 대한 부분의 혼란 가능성

- 장애인 생활비 및 연금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유료'라는 부분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활동 보조 서비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전제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럴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강제 부분까지 넣어야 한다.

- '유료'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맞지만, 기존 법률에 이미 그런 조항(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 구체적 사항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강조+ 비용 강조'의 2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결론 제반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다.

- 시각장애인들은 자립생활에 대해 공감하고 연구되고 있는가?(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시각장애여성이 자립생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더 들겠는가
- 자립생활을 위해 시각장애여성의 자유로운 일상에 관한 선택권을 제한받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
- 기타

11. 시설폭력

문제점

- 1)합법적,불법적인 시설들의 시당국의 관리 미비
- 2)직계존속 체계로 되어있는 운영시스템
- 3)폭력예방, 방지(신고,비밀보장)시스템의 미비
 - 시설내의 부서가 아닌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되어야 함.
- 4)시설과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
- 5)정기적인 성교육프로그램과 사회의 정보접근 미비
- 6)구속 후 다시 복귀하여 계속되는 폭행
 - 재복귀의 문제. 방지시스템 미비
- 7)시설 직원의 전문성 미비

- 각종 시설에서 청각, 시각 장애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학대 괴롭힘과 폭력(식사, 잠자리, 교육부재, 노동착취 등)
- 성폭력
- 기타